

## 제 7 장 보 칙

### 제36조 (해산 및 해산 신고)

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5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7조 (청산인)

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.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8조 (해산법인의 재산 귀속)

본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되, 국가, 지방단체,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.

### 제39조 (정관변경)

본회의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40조 (공고사항 방법)

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신 및 유선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.

### 제41조 (준용)

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## 부 칙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